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5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혼잡통행료 징수 방법이 양방향 징수에서 도심방향만 징수로 변경된 이후 혼잡통행료 징수소 주변 거주민의 필수통행(생활도로) 보장을 위하여 거주민 소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감경 신설 등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근거한 경형 승용 자동차 혼잡통행료 감경(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)을 조례에 명시(신설) (안 제6조제2항제1호)
- 나. 차량등록지(사용본거지)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의 소재지인 '서울특별시 중구'의 개인소유 자동차에 한하여 혼잡통행료 감경(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) 신설 (안 제6조제2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1. 23. ~ 2. 12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교통실 교통정책과 박진희(☎ 2133-2223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07:00~21:00시”를 “07:00~21:00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8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9호 중 “별표1”을 각각 “별표 1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

1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 자동차
2. 차량등록지(사용본거지)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‘서울특별시 중구’의 개인소유 자동차(다만, 법인소유 자동차, 임대 자동차 등 개인소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) ①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는 <u>07:00</u> <u>~21:00</u> 시로 한다. 다만, 토요일 과 일요일, 공휴일은 이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.	제4조(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) ① ----- <u>07:00</u> <u>~21:00</u> -----,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혼잡통행료의 감면) 제5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.	제6조(혼잡통행료의 감면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 및 <u>별표1</u> 에 따라 경형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 차	8. ----- ----- <u>별표 1</u> ----- ----- --
9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 및 <u>별표1</u> 에 따라 승용 겸화물형 승용자동차로 분류 되는 자동차	9.----- ----- <u>별표 1</u> ----- ----- -----
10. · 11. (생 략)	10. ·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</u> <u>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</u>

1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
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승
용 자동차

2. 차량등록지(사용본거지)의
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
소재지인 ‘서울특별시 중구’의
개인소유 자동차(다만, 법인소
유 자동차, 임대 자동차 등 개
인소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하
다)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중구 거주민 개인소유 자동차(법인, 임대자동차 제외)의 혼잡통행료 100분의 50 감면

개정안 : 차량등록지(사용본거지)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'서울특별시 중구'의 개인소유 자동차(다만, 법인소유 자동차, 임대 자동차 등 개인 소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)

※ 개요 : 남산 1,3호 터널 통과시 2인 이하 탑승 자동차, 1회당 2,000원 부과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분석 : 남산 1,3호 터널 통행량중 징수차량 거주지별 분석

(단위 : 대)

구분	합계	서울				경기	인천	기타 (수도권 외)
		소계	중구	용산	기타			
통행량 ('24.6월 기준)	251,433 (100%)	110,990 (44.1%)	8,586 (3.4%)	6,406 (2.5%)	95,998 (38.2%)	54,247 (21.6%)	22,576 (9.0%)	63,620 (25.3%)

$$- 8,586\text{대} \times 1,000\text{원} \times 12\text{개월} = 103,032,000\text{원}$$

※ 중구 거주지 차량중 경형자동차(1,000원), 법인 및 임대 자동차도 있을 수 있어, 세입 감소율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수입	혼잡통행료	60,102	103,032	103,032	103,032	103,032	472,230

※ 시행예정일 : 2025.6.1

4. 재원조달 방안 : 해당사항 없음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교통실 교통정책과 박진희(☎ 2133-2223)